

우이제크르르호

다우
본안칸

위위대기

농림관

38號

한글

사우보안립



미 원 결	건 정 부 기 입 재	찬 원 완	호 중 결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이
평
안
신
바
리
의
견
회
지
문
신

사우보안립
(출하의안)
해제의견

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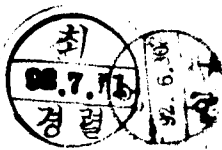


시
장

안입 수입
단기 단기
년 월 일 일
년 월 일 일
재 결



국
장



홍
기
파

동
계
회
파

노
림
파



문
기
계

계
회
파

산
티
기
계



7.3
회
발
문
서

발
문
서
회

2092

조사하용바경사가이환하고
임부기아았을뵤양이라기위

대기화되어여입기로준치성이
어있을것으로아르되부나나

가간이보안림을해제아우
가재결을양침아나아나

아 =

보안림 해제 고시안

취를투벌시구시제제호
산림령 제 3조 빛 동령 시령

구취제구주의구경에의구하
여보안림을다유미가대이내

제임다

다기이 : 구 : 년 7 일월 수 일

나
12
7
3
7
장

일
산
업
장

안
트

계	성 동	구	소 래
	구 호	동 0	지
	전 치	공 로	보 안
	10 1 7	리 번	기
	양 막	리 부	
	12 00	정 14 00	면 안 권 상
	12 00	정 12 00	면 하 권 제
	상 차	조 중 면	
	감 동 기	도 주 자	
	전 주 후	사 해 주 제	

비
고

사
우
로
7
면
시
장
0
면
후
0
0
0

본 권 보안법 해제에 관한 건
별관 회의 같이
공시회
4

시보에 게재하여 주심을 양망
하나 이나
20

비밀관공시안
이기할것

안 (2)

각각 장

부시강
3

빙 건 동 0 건
별귀와같이
고시외역수
4

양 지 영 시 암

이 별 리 는 고 시 암 이 기 향 리 수

안 조

각 구 청 장
알로 부 시 장

빙 건 동 0 건
별귀와같이
고시외역수
4

일반에게 주리게 하십시오
“주” 별리는 고시안 이기함 것

안
은

시
강

농림부 장관 관

앞

복
견
준^도치할
건
니런
크
가
영
는
보
안

림
12
은
3

별
기
와
강
이
해
제
의
영
향
감

기이에 보코 하나이다

“³주” 별지는 곡의 안이 가향의

안
7

시
장

성동주신남동(2)의트트

이 평순 알

귀하로부터 동년
신침환
버리의견

이 밤
에 지와 가
고 이 해
나 제
나 주
치 하
영 기

이 밤
에 지와 가
고 이 해
나 제
나 주
치 하
영 기

關係法令拔萃

森林令

第三條 農林部長官은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할時 또는 保安林으로 하여금 存置

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할時는 保安林을 解除할수있다

森林令施行規則

第一條 左의 各号에 關한 事項은 地方長官이 이를 處理하여야 한다

但, 따로 指定하는 國有森林에 對하여는 例외로 한다

一、 面積百町步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國有森林의 貸付와 그 國有森林에 關한

第十六條 第十七條 및 森林令 第十七條의 處分

二、 森林의 産物로서 推定金額二千圓以下의 것에 關한 處分

三、 面積二十町步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國有森林에 關한 處分

四、 森林令 第一條 第三條 乃至 第五條 및 第九條의 處分

地方長官이 前項의 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

第九條 保安林의 編入 또는 解除는 地域을 定하고 地方官廳의 公布式에 依하여 地方長官이

이를 告示하여야 한다

